

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(흐름도)



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할 때 약 15단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

연구, 교육, 산업분야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및 작업 절차



Step 01

- 작업 전 확인 절차 ●
- ① 작업 내용 확인
- ②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작업 내용 및 작업 시간 보고
- 축정 장비 교정 일자 및 교정 필증 확인
- 측정 장비 정상 작동 확인 및 백그라운드 측정



Step 02

- 출입 전 확인 절차 ●
- 1 출입기록부에 출입 일시 및 출입 목적 등을 기재
- ② 개인선량계 착용
- ③ 사용 전 방사선량률 측정 및 최근 측정 값과 비교하여 누설 여부를 점검
- 4 정해진 작업 절차에 따라 사용



- 사용 후 확인 절차 ●
- 해당 작업에 대한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부 기재
- 방사선발생장치 부근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측정 기록부에 기록
- 양 방호 장비 반납 및 개인 선량계 지정 장소에 보관

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법규정

▶ 방사선 장해 방지 조치 사항 ◀

01

<mark>방사선장해</mark>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 방사선량 및 방사성 오염 측정
- 2 건강 진단
- ③ 피폭 관리
- 항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(피폭 저각화)

02

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03

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또는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한 <mark>조치</mark>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 원자력이용시설의 출입제한
- ② 기타 필요한 보건상 조치.
 -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 조치
 - 출입시간 단축 또는 출입 금지
 - 방사선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 전화

이 브로셔는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물임(No. 2020M2C7A1A0107944411).